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12.

13.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19년 11월 13일

나. 발 의 자: 허홍석 의원 외 6명

다. 회부일자: 2019년 11월 20일

라. 상정일자: 제218회 영등포구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2019. 12. 5.)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허홍석 의원)

가. 제안이유

❍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사랑상품권의 발행과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상품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영등포사랑상품권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조치 및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 상품권운영대행사 선정 및 시스템 활용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 가맹점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임경태)

❍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화폐의 유통기반 조성 및 이용 활성화를 통해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총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 안 제4조에서는 영등포사랑상품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에서는 영등포사랑상품권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조치 및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 안 제7조에서는 영등포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 선정 및 시스템 활용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 안 제8조에서는 가맹점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9조에서는 영등포구 일원으로 하는 상품권의 유통지역에 대해 규정함.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소상공인의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일환으로 영등포구 지역화폐인 “영등포사랑상품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 지역자금의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 외 유출을 방지하고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순환경제의 구축,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밖에 상위법 저촉이나 자구에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허홍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2

발의년월일 : 2019년 11월 일
발 의 자 : 허홍석 의원 외 6명

1. 제안이유

지역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사랑상품권의 발행과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1부터 제3조까지)

나. 상품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영등포사랑상품권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조치 및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라. 상품권운영대행사 선정 및 시스템 활용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마. 가맹점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제정안 :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련 근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집행

다. 입법예고 (2019. 11. 14. ~ 11. 18.) :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등포구 영등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등포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영등포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를 불문하고 일정한 금액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가맹점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상품권의 발행) ①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단 상품권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1회에 한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상품권의 이용 활성화 조치) ① 구청장은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 및 시상금, 맞춤형 복지혜택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상품권 유통촉진을 위한 행사 및 축제, 경품제공, 상품권 홍보 등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사업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이를 추진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품권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업
2.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
3. 상품권 보급 및 이용에 관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4. 상품권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동 운영대행사의 선정·관리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상품권 사용자에게 할인판매, 추가충전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주거나, 가맹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시 구매한도 설정, 가맹업종 제한, 결제 수단 설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운영대행사의 선정) 구청장은 상품권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운영 ·유지보수 및 판매(충전)·환전·환불 등의 업무에 적합한 기술을 가진 기관을 선정하거나, 중앙정부 등 타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제8조(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으로 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 산업을 운영하는 경우
2.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4.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으로서 구청장이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유통지역)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영등포구 일원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